

재단법인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정관

제정	2005. 7. 6.	정관 제 4호
개정	2005. 8.29.	" 제 6호
개정	2005.12.19.	" 제11호
개정	2007. 3.16.	" 제62호
개정	2007.11.13.	" 제70호
개정	2009. 2.18.	" 제95호
개정	2010. 2.10.	" 제116호
개정	2010. 7.16.	" 제124호
개정	2013.11.28.	" 제166호
개정	2020.11. 6.	" 제258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민족문화유산(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매장문화재를 포함한다)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출토유물의 보존처리 및 그 활용을 통해 민족문화를 전승·보급하고, 아울러 문화유산의 총체적인 보존관리체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북도 관내에 두고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①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재 조사, 연구 및 관련자료 발간
2. 문화재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사업
3. 지역 역사문화유산 자료수집 및 보관전시
4.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의 위임, 위탁사업
5. 전문인력 양성 및 사회교육활동
6. 기타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2 장 임 원

제5조(임원의 구성) ①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 1인
3.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이사장 및 연구원장을 포함한다)
4. 감 사 2인

②연구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선임) ①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여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 연구원장, 충청북도의 담당국장은 이사회에서 선임 없이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②감사는 2인 중 충청북도의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1인은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이사장) 이사장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된다.

제8조(연구원장) ①연구원장은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이사가 임명한다.

②연구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연구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연구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와 해임) ①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당연직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할 때 종료되며 후임자가 승계 한다.

③선임이사와 감사 중에서 결원이 발생시에는 이사회에서 2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이 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⑤임원이 임기 중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유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충청북도의 담당국장, 연구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상근 이사인 연구원장은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되 다른 직무에 종사하기 위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정관에 의거 설치 운영되는 기구의 운영 및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4. 제1호 및 제2호, 제3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도지사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6.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9조 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 3 장 이 사 회

제1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3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법인의 예산, 사업계획,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6. 운영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법령, 조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지소 또는 산하기관 설치에 관한 사항
9.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0.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조(신분보장)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1. 법령·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의 의결에 위반되었을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법인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3. 신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이사회가 의결한 경우

제15조(임원의 보수) ①비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예산 범위 안에서 여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상근 이사인 연구원장은 유급으로 하되, 그 기준은 별도의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매년 2월, 11월에 개최한다.

②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 1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장이 소집한다.

③이사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그 목적,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이사장은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이사회 의장은 이사장 또는 미리 지명한 이사의 순으로 한다.

제17조(의결정족수 등)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변경 및 재단해산의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이사는 그가 지명하는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정족수에 당해 이사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은 서면으로 작성된 위임장을 회의 전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서면결의) ①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사항 중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의결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법인과 이사장 또는 이사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이사장 또는 이사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0조(회의록 및 보고) ①이사회 회의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한 이사 2명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사회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재 산 및 회 계

제21조(재산) ①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별표1)
2. 설립 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 및 개인이 출연한 토지, 건물 등 부동산
3. 출연금 및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청장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4.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 할 것을 의결한 재산
5.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③기본재산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을 개정하여야 한다.

④법인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22조(재산의 평가)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가격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23조(재산의 관리) ①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대여, 용도변경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법인의 임원
2.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자

③제2항 각 호 이외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에도 재단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④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제24조(잉여금의 처리)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 보전

2. 다음연도 목적사업 운영비용으로의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위한 적립

제25조(경비의 조달방법)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조달한다.

제26조(차입금) 법인이 자금의 정기차입(당해연도 내에 상환하는 일시 차입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8조(사업계획과 예산) ①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 의 결을 거쳐 당해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를 경유,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정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 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 명세서

②법인의 예산은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여 운용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한다.

③법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인건비 및 시설유지비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④법인의 예산운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 의 결을 거쳐 도지사와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서에는 업무현황과 재산목록, 감사결과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30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등) ①법인은 매년 3월 이전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법인은 전항에 규정된 것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 관
2. 임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3. 이사회 회의록
4.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5. 자산대장
6.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과의 수발된 문서
7. 기타 법인 운영을 위하여 작성된 서류

③제2항 제1호·제2호·제3호 및 제5호의 서류는 영구, 제4호의 서류는 5년 이상, 제6호·제7호의 서류는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31조(공고의 방법) 법령 또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해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충청북도 내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

제32조(운영위원회) 삭제 <2020.11.06.>

제 6 장 조직 및 직원

제33조(직제 및 정원) 법인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직원) ①법인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와 관련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 및 겸임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 또는 겸임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당 등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다.

②직원의 인사, 복무 보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운영규정) 삭제 <2020.11.06.>

제 7 장 보 칙

제36조(정관의 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것을 도지사를 경유하여 청장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제37조(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도지사를 경유하여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잔여재산의 귀속) ①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은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제39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규정제정 이전의 인사 및 예산집행과 관련하여서는 관계법령 및 충청북도의 관련조례와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준용)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청장의 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법원의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연도) 법인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 등기일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3조(설립전 업무대행) 법인 설립전 재단의 기능은 도지사가 대행하며 이를 위해 도지사가 행한 모든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설립당시의 임원) 법인설립 당시의 임원은 “별표 2” 와 같다.

제5조(예산안의 승인) 본 정관 제28조에 규정한 도지사의 예산안 승인과 예산편성기준의 설정은 도지사의 출연이 종료되는 회계연도까지로 한다.

제6조(경과규정) 최초의 연구원장은 본 정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가 선임하여 취임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받고 법인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및 적용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11월2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단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목록

구 분	금 액	비 고
현 금	200,000,000원 (이억원)	

[별표 2]

재 단 법 인 임 원

□ 이 사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계	11 명			
이사	당연직	충청북도	도 지 사	이원중
	”	충청북도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	도의회관광건설위원회	위 원 장	심홍섭
	”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원 장	이종배
	선임직	한국전통문화학교	석좌교수	정재훈
	”	전통건축연구소	대 표	손영식
	”	단국대학교 박물관	관 장	정영호
	”	도문화재위원회 3분과	위 원 장	최근영
	”	충주대학교 (한국사)	교 수	최일성
	”	충청북도개발연구원	원 장	이태일
	”	충청북도향토사연구소	소 장	김예식

□ 감 사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계	2 명			
감사	당연직	충청북도	문화예술과장	박응희
	선임직	김동완세무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김동완